

# 협력병원 협약서

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)과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(이하 “병원”)은 “재단”에 소속된 임직원 및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자 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## 제1조(총칙)

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기관은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를 행한다.

## 제2조(목적)

본 협약은 재단 임직원 및 회원들의 외래 및 입원진료, 검진상담 및 의료 건강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3조(회원확인)

재단 임직원 및 회원들의 진료 및 상담에 편의를 제공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 확인을 증명하여야 한다.

## 제4조(이용범위)

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에 한 한다.

## 제5조(특전)

1. 제반 진료절차 및 입·퇴원 수속에 있어 타 환자에 우선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한다.
2. 각종 의료상담에 협력병원의 신의로 성실히 상담한다.
3. 기타의 사항은 사회 통상의 관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4. 위 사항은 임직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나, 재단의 특별요청이 있을시 직계 존·비속의 가족도 동일한 우대를 한다.

### 제6조(홍보)

재단은 임원과 회원 및 그 가족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.

### 제7조(내용변경)

재단과 병원은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### 제8조(협약기간)

본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쌍방이 해지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1년씩 자동 연장 한다.

### 제9조(기타사항)

본 협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
### 제10조(협약서 보관)

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의 각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6월 9일



김해시복지재단

대표이사  
직무대리

이 봉 재

이 봉 재



경희대학교  
교육협력 중앙병원

병원장 김 동 옥

김 동 옥